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 (㈱한 화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부거래 및 관련 거래를 심사 및 승인한다.

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함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포함되어야 하고,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위원회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단,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중 1 인을 호선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의장을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신병, 해외여행 등 기타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항에 정한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 장 회 의

제 6 조 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**매 분기 1 회 개최**한다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 (卍한 화)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회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우편, 모사전송(FAX)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의안제출)

- ①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에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 10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11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,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, 유가증권, 자산거래 중 거래금액이 자본 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80억원 이상인 거래
- ②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,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위한 상품용역거래 중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가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 (주한 화)

- ③ 1항, 2항의 거래에서 거래 목적, 거래대상, 거래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또는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%이상 증가시

제 12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4 조 (보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6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제정 시행일)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개정 시행일)

이 규정은 200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 3 조 (개정 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 4 조 (개정 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 5 조 (개정 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 (주한 화)

제 6 조 (개정 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7 조 (개정 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